

제 1188 호
1985.9.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편집인 : 서울특별시청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 고 시
 - 제 65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 변경시행허가 2
 - 제 654 호 :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차분계획변경인가고시 2
- ◎ 공 고
 - 제 583 호 :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인가제지들 위한 공람공고 2
- ◎ 사 령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민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683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65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도로)변경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82호(78.8.1) 및 동고시 제 515호(78.10.4)로 시행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사업기간연기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1985. 9. 30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내발산동산 59-2 일대 및 동소 436-3 산 58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도로)변경시행허가
- 다. 허가사항
 - 당초허가기간 : 78.8.1~85. 9
 - 연기허가기간 : 78.8.1~86.6.30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강서구내발산동산 59-2 학교법인 금운학원

◎ 서울특별시고시제 654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고시

- 1. 서울특별시공고 제 502호(85.8.28)

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현저 3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제 42 조와 제 6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변경인가 고시한다.

- 2. 위 인가내용을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위 인가고시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종로구청(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9. 30

서울특별시장

- 가. 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현저 3 구역)
- 나. 위치 : 종로구무악동 7 번지일대
- 다. 면적 : 116,482.3 ㎡
-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변경인가내역 : 생략(개별통보문 참조)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583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
폐지를 위한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 184호(75.11.13)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3 호 (78.7.4) 및 같은고시 제 278 호 (82.7.21) 로 시행인가된 가락 제 2 구역에 대하여

2. 당초 인가된 시행인가 내용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 구역에 대한 시행인가를 폐지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 30 조 1 항과 같은법 제 31 조 1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 공고한다.

3. 관내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안에 관할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5. 9.30
서울특별시장

가. 시행인가 폐지내용

사업명칭	시행구역	면적 (㎡)		주된사무소	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폐지			
가 락 제 2 구역	가락동 산 60-3	13,202	13,202	서울특별시	'86.12.31	서울특별시장

나. 시행인가 폐지사유

당초 서울특별시를 시행자로 주민 단독개발을 위해 시행인가 되었으나, 지역여건상 시행완료되지 못하고 현재 주민에 의해 합동개발

방법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동시에 행에 부합된 사업내용에 따라 시행인가코저 현 인가내용을 폐지하는 것임.

다. 공람기간: 85.10.3-11.2 (30일간)

사 령

©1985년 9월 30일

령 제 36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종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내무국	지방건축기사

◎ 1985년 9월 30일		령 제 36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진복	올림픽건축담당관 파견 ('85.9.30 ~ '85.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원
◎ 1985년 10월 1일		령 제 36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진수	의약과 근무를 명함.	정신병원	지방약무사보
◎ 1985년 9월 25일		령 제 36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조병희	부직을 명함.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